

2008. 4. 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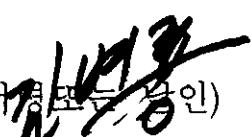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1. 의안발의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김병룡 의원 (서명  날인)
의 3인

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김병룡	김병룡	
김영섭		
劉永和	류영화	
성명중		

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

의안번호	1252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 7.
발 의 자 : 김병룡 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농업의 과학화 및 농·축·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함으로써 선도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목적과 상의 명칭을 정함(안 제1~2조)
- 식량생산 부문, 약초·특작·화훼 부문, 채소·과수 부문, 축산·수산 부문, 친환경농업·신기술 부문, 농식품 유통가공 부문, 여성농업인 부문의 시상부문과 시상인원을 정함(안 제3조)
- 수상후보자는 농업소득 중대에 기여한 개인, 생산자 단체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함.(안 제4조)
-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결정, 심사기준을 정함(안 제5~7조)
-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날 행사시 시상하며, 수상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정함(안 제10~11조)

3. 관련법규 : 해당 없음

붙임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1부. 끝.

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·축·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·축·수산·농식품업인(이하 “농업인”이라 한다)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명칭) 이 상의 명칭은 제천시농업인대상이라 칭한다.

제3조(시상부문과 인원)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식량생산 부문
2. 약초·특작·화훼 부문
3. 채소·과수 부문
4. 축산·수산 부문
5. 친환경농업·신기술 부문
6. 농식품 유통가공 부문
7. 여성농업인 부문

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.

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수상후보자의 자격) ① 수상후보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, 생산자 단체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.

-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
-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.

제5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① 읍·면·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농축산 관련 협동 조합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추천서 1통
2. 공적조서 1통
3. 단체 소개서(개인 이력서) 1통
4. 기타 공적 증빙 자료
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수상자의 결정) 수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제천시농정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심사·결정한다.

제7조(심사기준) ① 심의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, 공적심사 서류,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사결과의 통보) 심의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상)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.

제11조(수상자에 대한 예우)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
2.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
3. 국내·외 연수기회 부여
4.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

제12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